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261301 부당이득금

원 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강○○

피 고 1. ○○특별시

2. ○○특별시 ○구

소송대리인 B

3. ○○특별시 ○○구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주○○

4. ○○도

소송대리인 C

5. ○○시

소송대리인 D, 변호사 강○○

변 론 종 결 2025. 5. 13.

판 결 선 고 2025. 5.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특별시는 47,354,903원 및 그중 43,920,115원에 대하여,

나. 피고 ○○특별시 ○구는 14,385,920원 및 그중 13,344,200원에 대하여,

다. 피고 ○○특별시 ○○구는 19,439,017원 및 그중 18,027,325원에 대하여,

라. 피고 ○○도는 7,460,018원 및 그중 6,919,100원에 대하여,

마. 피고 ○○시는 37,300,580원 및 그중 34,595,280원에 대하여,

피고 ○○도는 2021. 10. 15.부터, 나머지 피고들은 각 2021. 10.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E병원은 ○○ ○구 F 토지 중 1,585.60㎡(이하 'E병원 토지'라 한다)를, G병원은 ○○ ○○구 H 토지 외 18필지 중 3,685.70㎡(이하 'G병원 토지'라 한다)를, I병원은 ○○시 ○○○구 J 토지 외 2필지 중 11,508.3㎡(이하 'I병원 토지'라 하고, E병원 토지와 G병원 토지 및 I병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나. ○○특별시 ○구청장은 E병원 토지에 관하여, ○○특별시 ○○구청장은 G병원 토지에 관하여, ○○시 ○○○구청장은 I병원 토지에 관하여 각 [별지1] 기재와 같이 2016년 및 2017년 귀속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경감 규정'이라 한다)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표준(또는 과세대상)에서 50%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부과금액을 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전액 납부하였고,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중 E병원 토지에 관한 부분의 50%는 피고 ○○특별시에, 나머지 50%는 피고 ○○특별시 ○구에, G병원 토지에 관한 부분의 50%는 피고 ○○특별시에, 나머지 50%는 피고 ○○특별시 ○○구에, I병원 토지에 관한 부분은 피고 ○○시에 각 귀속되었으며[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8조 제4항 제4호], 지방교육세 중 E병원 토지 및 G병원 토지에 관하여 납부한 부분은 피고 ○○특별시에, I병원 토지에 관한 부분은 피고 ○○도에 각 귀속되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든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쟁점 토지'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나머지 토지'라 한다) 역시 그중 하나로 포섭되어야 한다.

2)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나)목], 쟁점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3) 따라서 쟁점 토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



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쟁점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 근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문언상 의미가 분명하므로 쟁점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쟁점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1) 쟁점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이지는 조세 법규의 해석만이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 대상에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4248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나)목은 문언상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세 법규의 객관적인 문언에 명백하게 반하는 해석이다.

3)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는 제2항 제2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5. 1. 5.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는 구 지방세법 제106



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와 같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05. 1. 5.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234조의15가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2005. 1. 5.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와 구 지방세법 제106조는 '과세대상의 구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명확히 구분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를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세 의무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과세관청이 그동안 대부분의 재산세 과세 처분에서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2017년도, 2018년도 부과 처분까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 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2019년도 부과 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부과 처분의 하자는 각 처분 당시 명백했다고 보아야 한다.

5) 지방세법은 2019. 12. 3. '현행 규정상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대상 구분 체계상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것인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세율 적용에 관한 조항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을 규정한 제106조 제1항에서 제1호의 단서와 제2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세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113조 제1항에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 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이는 법문언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부과 처분 당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그 문언상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해석되므로, 해당 조항이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 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립 및 반환의 범위

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립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1) 분리과세에 따른 세액 계산방식과 부당이득 액수의 산정

가) 쟁점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나머지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다) 이 사건 경감 규정은 재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및 위 나)항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 과세대상 구분 후 과세표준에 해당 경감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지방세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함이 타당하다.

라)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과세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를 경감비율에 따라 감면분(쟁점토지)과 비감면분(나머지 토지)을 나눈 후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한편 감면 전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대상토지 중 감면분(쟁점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하 '이 사건 세액 계산방식'이라 한다)이다.

마) 한편 이 사건 세액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정당세액이 [별지3] 각 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납부한 세액이 같은 표 '과세·납부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같은 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이 된다.

2) 이 사건 세액계산방식에 대한 피고 ○○특별시, ○○특별시 ○구, ○○특별시 ○



○구, ○○도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세액계산방식에 따르는 경우 ① 중복감면을 배제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반하고,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나머지 토지 중에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다시 발생하게 되며, 이 부분에 대하여도 반복적으로 분리과세로 전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순환반복의 문제가 있으므로,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로의 구분 전환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 - 경감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 부분은 본래의 과세대상 분류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예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쟁점 토지 부분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복 감면의 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을 곱하여 경감하는 등의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 특례



의 배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은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제105조),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제106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였다(제110조, 제111조). 결국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하는바(위 2018두45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지방세법의 규정, 내용, 구조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 토지가 처음부터 분리과세대상으로 포섭되는 것일 뿐, 그 과세대상 구분을 전환시키는 규정이라거나, 더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의하여 중복 특례가 배제되는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면 규정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을 제외한 이 사건 경감 규정뿐이므로, 그 전제가 다른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순환반복 문제 주장에 관한 판단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정당세액 계산은 ① 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하나로 과세대상을 구분한 뒤(과세대상 구분 단계), ②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하고(과세표준 산출 단계), ③ 그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세액적용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경감 비율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대상의 구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후 각 과세대상에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감 비율만큼의 과표를 공제



하는 것은 과세표준 산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사건 각 토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한 뒤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지 다시 과세대상의 구분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구체적 산정 결과

가) 원고가 납부한 세액이 [별지3] 각 표 '과세·납부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고, 이 사건 세액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정당세액이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가 납부한 세액에서 쟁점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나머지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각각의 과세대상에 대해 이 사건 감경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세액을 제외한 과오납액 및 이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2016. 3. 7. 이후 개정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2021. 10. 15.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면 [별지4]와 같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특별시는 47,354,903원(= 2016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부당이득금 18,098,920원 + 2017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부당이득금 25,821,195원 + 환급가산금 합계액 3,434,788원) 및 그중 부당이득금 합계액인 43,920,115원에 대하여, 피고 ○○특별시 ○구는 14,385,920원(= 2016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부당이득금 5,388,755원 + 2017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부당이득금 7,955,445원 + 환급가산금 합계액 1,041,720원) 및 그중 부당이득금 합계액 13,344,200원에 대하여, 피고 ○○특별시 ○○구는 19,439,017원(= 2016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부당이득금 7,539,045원 + 2017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부당이득금 10,488,280원 + 환급가산금 합계액 1,411,692원) 및 그중 18,027,325원에 대하여, 피고 ○○도는 7,460,018원(= 2016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부당이득금 2,956,390원 + 2017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부당이득금 3,962,710원 + 환급가산금 합계액 540,918원) 및 그중 부당이득금 합계액 6,919,100원에 대하여, 피고 ○○시는 37,300,580원(= 2016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부당이득금 14,781,870원 + 2017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부당이득금 19,813,410원 + 환급가산금 합계액 2,705,300원) 및 그중 34,595,280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도는 2021. 10. 15.부터, 나머지 피고들은 2021. 10.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임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를 원인으로 한 청구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7

판사 이○○



[별지1] 원고의 납부 내역

[재산세 등 납부 내역(E병원)]

2016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액합계
재산세	일반분	과세표준	-	7,243,480,860	-	37,914,790
		산출세액	-	27,773,920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7,243,480,860	-	
		산출세액	-	10,140,870	-	
지방	과표		27,773,923			5,554,780
교육세	산출세액		5,554,780			

2017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액합계
재산세	일반분	과세표준	-	15,990,702,350	-	85,149,790
		산출세액	-	62,762,809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15,990,702,350	-	
		산출세액	-	22,386,980	-	
지방	과표		62,762,809			12,552,560
교육세	산출세액		12,552,560			

[재산세 등 납부 내역(G병원)]

2016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액합계
재산세	일반분	과세표준	-	10,996,428,961	-	58,123,060
		산출세액	-	42,785,700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10,996,428,961	-	
		산출세액	-	15,337,360	-	
지방	과표		42,785,700			8,557,140
교육세	산출세액		8,557,140			

2017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액합계
재산세	일반분	과세표준	-	21,939,087,576	-	117,211,670
		산출세액	-	86,556,340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21,939,087,576	-	
		산출세액	-	30,655,330	-	
지방	과표		86,556,340			17,311,260
교육세	산출세액		17,311,2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7

[재산세 등 납부 내역(병원)]

2016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액합계
재산세	일반분	과세표준	-	11,483,505,460	-	60,810,920
		산출세액	-	44,734,020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11,483,505,460	-	
		산출세액	-	16,076,900	-	
지방 교육세	과표		44,734,021			8,946,800
	산출세액		8,946,800			

2017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액합계
재산세	일반분	과세표준	-	21,449,610,588	-	114,627,890
		산출세액	-	84,598,440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21,449,610,588	-	
		산출세액	-	30,029,450	-	
지방 교육세	과표		84,598,440			16,919,680
	산출세액		16,919,680			

- 끝 -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과세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 끝 -



[별지3] 부당이득금 계산 내역(단위: 원)

[피고 ○○특별시, ○○특별시 ○구, ○○특별시 ○○구]

세목	병원구분	귀속연도	과세·납부액	정당세액	차액	부당이득 주체 및 부당이득금
재산세	E병원	2016	37,914,790	27,137,280	10,777,510	피고 ○○특별시 및 ○○특별시 ○구 각 5,388,755
		2017	85,149,790	69,238,900	15,910,890	피고 ○○특별시 및 ○○특별시 ○구 각 7,955,445
	G병원	2016	58,123,060	43,044,970	15,078,090	피고 ○○특별시 및 ○○특별시 ○○구 각 7,539,045
		2017	117,211,670	96,235,110	20,976,560	피고 ○○특별시 및 ○○특별시 ○○구 각 10,488,280
지방교육세	E병원	2016	5,554,780	3,399,280	2,155,500	피고 ○○특별시 2,155,500
		2017	12,552,560	9,370,390	3,182,170	피고 ○○특별시 3,182,170
	G병원	2016	8,557,140	5,541,520	3,015,620	피고 ○○특별시 3,015,620
		2017	17,311,260	13,115,960	4,195,300	피고 ○○특별시 4,195,300

[피고 ○○도, ○○시]

세목	병원구분	귀속연도	과세·납부액	정당세액	차액	부당이득 주체 및 부당이득금
재산세	I병원	2016	60,810,920	46,029,050	14,781,870	피고 ○○시 14,781,870
		2017	114,627,890	94,814,480	19,813,410	피고 ○○시 19,813,410
지방교육세		2016	8,946,800	5,990,410	2,956,390	피고 ○○도 2,956,390
		2017	16,919,680	12,956,970	3,962,710	피고 ○○도 3,962,710

- 끝 -



[별지4] 가산금 계산 내역

1. 피고 ○○특별시

가. 2016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환급액 18,098,920원(5,388,755원+7,539,045원+2,155,500원+3,015,620원)에 대한 가산금

기간(일수)	이율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금액(원 단위 미만 버림)
2016. 10. 1.~2017. 3. 14. (165일)	1.8%	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7,270원 (18,098,920원*1.8%*165일/365일)
2017. 3. 15.~2018. 3. 18. (369일)	1.6%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2,756원 (18,098,920원*1.6%*369일/365일)
2018. 3. 19.~2019. 3. 19. (366일)	1.8%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26,673원 (18,098,920원*1.8%*366일/365일)
2019. 3. 20.~2020. 3. 12. (359일)	2.1%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72,808원 (18,098,920원*2.1%*359일/366일)
2020. 3. 13.~2021. 3. 15. (368일)	1.8%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28,458원 (18,098,920원*1.8%*368일/365일)
2021. 3. 16.~2021. 10. 15. (214일)	1.2%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7,337원 (18,098,920원*1.2%*214일/365일)
합계 금액: 1,595,302원			

나. 2017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환급액 25,821,195원(7,955,445원+10,488,280원+3,182,170원+4,195,300원)에 대한 가산금

기간(일수)	이율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금액(원 단위 미만 버림)
2017. 10. 1.~2018. 3. 18. (169일)	1.6%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1,289원 (25,821,195원*1.6%*169일/365일)
2018. 3. 19.~2019. 3. 19. (366일)	1.8%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66,054원 (25,821,195원*1.8%*366일/365일)
2019. 3. 20.~2020. 3. 12. (359일)	2.1%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31,874원 (25,821,195원*2.1%*359일/366일)
2020. 3. 13.~2021. 3. 15. (368일)	1.8%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68,601원 (25,821,195원*1.8%*368일/365일)
2021. 3. 16.~2021. 10. 15. (214일)	1.2%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1,668원 (25,821,195원*1.2%*214일/365일)
합계 금액: 1,839,486원			

다. 환급가산금 합계: 3,434,788원(= 1,595,302원+1,839,486원)



2. 피고 ○○특별시 ○구

가. 2016년 귀속 재산세 환급액 5,388,755에 대한 가산금

기간(일수)	이율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금액(원 단위 미만 버림)
2016. 10. 1.~2017. 3. 14. (165일)	1.8%	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3,848원 (5,388,755원*1.8%*165일/365일)
2017. 3. 15.~2018. 3. 18. (369일)	1.6%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7,164원 (5,388,755원*1.6%*369일/365일)
2018. 3. 19.~2019. 3. 19. (366일)	1.8%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7,263원 (5,388,755원*1.8%*366일/365일)
2019. 3. 20.~2020. 3. 12. (359일)	2.1%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0,999원 (5,388,755원*2.1%*359일/366일)
2020. 3. 13.~2021. 3. 15. (368일)	1.8%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7,794원 (5,388,755원*1.8%*368일/365일)
2021. 3. 16.~2021. 10. 15. (214일)	1.2%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7,913원 (5,388,755원*1.2%*214일/365일)
합계 금액: 474,981원			

나. 2017년 귀속 재산세 환급액 7,955,445원에 대한 가산금

기간(일수)	이율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금액(원 단위 미만 버림)
2017. 10. 1.~2018. 3. 18. (169일)	1.6%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8,935원 (7,955,445원*1.6%*169일/365일)
2018. 3. 19.~2019. 3. 19. (366일)	1.8%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3,590원 (7,955,445원*1.8%*366일/365일)
2019. 3. 20.~2020. 3. 12. (359일)	2.1%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3,869원 (7,955,445원*2.1%*359일/366일)
2020. 3. 13.~2021. 3. 15. (368일)	1.8%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4,374원 (7,955,445원*1.8%*368일/365일)
2021. 3. 16.~2021. 10. 15. (214일)	1.2%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5,971원 (7,955,445원*1.2%*214일/365일)
합계 금액: 566,739원			

다. 환급가산금 합계: 1,041,720원(= 474,981원+566,739원)



3. 피고 ○○특별시 ○○구

가. 2016년 귀속 재산세 환급액 7,539,045원에 대한 가산금

기간(일수)	이율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금액(원 단위 미만 버림)
2016. 10. 1.~2017. 3. 14. (165일)	1.8%	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1,345원 (7,539,045원*1.8%*165일/365일)
2017. 3. 15.~2018. 3. 18. (369일)	1.6%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1,946원 (7,539,045원*1.6%*369일/365일)
2018. 3. 19.~2019. 3. 19. (366일)	1.8%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6,074원 (7,539,045원*1.8%*366일/365일)
2019. 3. 20.~2020. 3. 12. (359일)	2.1%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5,291원 (7,539,045원*2.1%*359일/366일)
2020. 3. 13.~2021. 3. 15. (368일)	1.8%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6,818원 (7,539,045원*1.8%*368일/365일)
2021. 3. 16.~2021. 10. 15. (214일)	1.2%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3,041원 (7,539,045원*1.2%*214일/365일)
합계 금액: 664,515원			

나. 2017년 귀속 재산세 환급액 10,488,280원에 대한 가산금

기간(일수)	이율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금액(원 단위 미만 버림)
2017. 10. 1.~2018. 3. 18. (169일)	1.6%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7,699원 (10,488,280원*1.6%*169일/365일)
2018. 3. 19.~2019. 3. 19. (366일)	1.8%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9,306원 (10,488,280원*1.8%*366일/365일)
2019. 3. 20.~2020. 3. 12. (359일)	2.1%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6,041원 (10,488,280원*2.1%*359일/366일)
2020. 3. 13.~2021. 3. 15. (368일)	1.8%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0,340원 (10,488,280원*1.8%*368일/365일)
2021. 3. 16.~2021. 10. 15. (214일)	1.2%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3,791원 (10,488,280원*1.2%*214일/365일)
합계 금액: 747,177원			

다. 환급가산금 합계: 1,411,692원(= 664,515원+747,177원)



4. 피고 ○○도

가. 2016년 귀속 지방교육세 환급액 2,956,390원에 대한 가산금

기간(일수)	이율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금액(원 단위 미만 버림)
2016. 10. 1.~2017. 3. 14. (165일)	1.8%	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056원 (2,956,390*1.8%*165일/365일)
2017. 3. 15.~2018. 3. 18.(369일)	1.6%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7,820원 (2,956,390*1.6%*369일/365일)
2018. 3. 19.~2019. 3. 19. (366일)	1.8%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3,360원 (2,956,390*1.8%*366일/365일)
2019. 3. 20.~2020. 3. 12. (359일)	2.1%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0,896원 (2,956,390*2.1%*359일/366일)
2020. 3. 13.~2021. 3. 15. (368일)	1.8%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3,652원 (2,956,390*1.8%*368일/365일)
2021. 3. 16.~2021. 10. 14. (213일)	1.2%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702원 (2,956,390*1.2%*213일/365일)
합계 금액: 260,486원			

나. 2017년 귀속 지방교육세 환급액 3,962,710원에 대한 가산금

기간(일수)	이율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금액(원 단위 미만 버림)
2017. 10. 11.~2018. 3. 18. (159일)	1.6%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7,619원 (3,962,710원*1.6%*159일/365일)
2018. 3. 19.~2019. 3. 19. (366일)	1.8%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1,524원 (3,962,710원*1.8%*366일/365일)
2019. 3. 20.~2020. 3. 12. (359일)	2.1%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1,625원 (3,962,710원*2.1%*359일/366일)
2020. 3. 13.~2021. 3. 15. (368일)	1.8%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1,915원 (3,962,710원*1.8%*368일/365일)
2021. 3. 16.~2021. 10. 14. (213일)	1.2%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7,749원 (3,962,710원*1.2%*213일/365일)
합계 금액: 280,432원			

다. 환급가산금 합계: 540,918원(= 260,486원+280,432원)



5. 피고 ○○시

가. 2016년 귀속 재산세 환급액 14,781,87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간(일수)	이율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금액
2016. 10. 1.~2017. 3. 14.(165일)	1.8%	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0,107원
2017. 3. 15.~2018. 3. 18.(369일)	1.6%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8,907원
2018. 3. 19.~2019. 3. 19.(366일)	1.8%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6,721원
2019. 3. 20.~2020. 3. 12.(359일)	2.1%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5,028원
2020. 3. 13.~2021. 3. 15.(368일)	1.8%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7,744원
2021. 3. 16.~2021. 10. 15.(214일)	1.2%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4,073원
합계 금액: 1,302,580원			

나. 2017년 귀속 재산세 환급액 19,813,410원 대한 환급가산금

기간(일수)	이율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금액
2017. 10. 11.~2018. 3. 18.(159일)	1.6%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7,984원
2018. 3. 19.~2019. 3. 19.(366일)	1.8%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57,509원
2019. 3. 20.~2020. 3. 12.(359일)	2.1%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8,855원
2020. 3. 13.~2021. 3. 15.(368일)	1.8%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58,880원
2021. 3. 16.~2021. 10. 15.(214일)	1.2%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9,498원
합계 금액: 1,402,720원			

다. 환급가산금 합계: 2,705,300원(= 1,302,580원+1,402,720원). 끝.